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
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90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5. 11.

발 의 자 : 임종득 · 김기웅 · 서천호  
이달희 · 박형수 · 백종헌  
안상훈 · 강선영 · 유용원  
서일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 산식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와 보통세 수입액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.

따라서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심각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방교부세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반하여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하여야 하는 행정, 복지 등의 비용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음.

이에 인구감소지역의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액을 가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3항제4호 신설).



##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교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기준재정수요액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준 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에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 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 정(補正)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기준재정수요액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의 인구감소 추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</p>